

OE-BS-13

오픈엣지 테크놀로지(주)

경영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2-03-31

제1조 【목 적】

이 규정은 정관 제42조 1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직무와 권한】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일상 경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한다.
- ② 위원회는 이사회에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.

제3조 【구성】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제4조 【위원장】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5조 【소집권자 및 소집절차】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간사는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- ③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 【결의방법】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이나 음성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 【부의사항】

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 - (2)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
 - (3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 - (4) 영업활동을 위해 체결하는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
 - 가. 비밀유지계약(NDA)
 - 나. 공동개발계약(JDA)
 - 다. 에이전트 관련 계약
 - 라. 신규사업 추진 위한 회사 설립 관련 계약
 - (5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 - (6) 조직, 인사, 노무에 관한 중요사항
 - (7) 사업계획, 사업구조조정 추진
 - (8) 해외 지사·현지법인 등의 신규진출, 이전 및 철수
 - (9)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추진
 - (10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
 - (11) 기술도입계획 및 기술공여정책
 - (12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- (13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 - (14) 기타 주요 경영현안
- ② 재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 각 항의 사항 중 회사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- (1) 자기자본 5% 미만의 타법인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 및 해외직접투자
 - (2) 자기자본 5% 미만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 및 채무면제
 - (3) 자기자본 5% 미만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증설, 차입계약 체결
 - (4) 자산총액 5% 미만의 자산취득 및 처분
 - (5) 사채의 모집
 - (6) 자기주식(신탁계약 체결 포함)의 취득 또는 처분
 - (7)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
 - (8) 기타 재무관련 주요 현안
 - (9) 기타 일상적인 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8조 【관계인의 의견청취】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 【의사록】

-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0조 【간사】

-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BS팀 팀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1조 【규정의 개정】

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